

1. 제정이유

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제재처분의 근거 규정은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단순·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나, 행정제재의 가중처분 시 차수 계산 기준이 미비하여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법령 해석·적용에 따라 국민권리 침해 우려가 있음

이에,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행정기관에 가중처분의 적용시점 및 차수계산을 명확히 하는 등의 “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”을 권고(“21.2)함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시 적용 순서도와 예시를 제시(안 제3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,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6 등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 없음

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

제1조(목적) 이 훈령은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법령과의 관계) 적용 대상 법령에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간, 횟수가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, 횟수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)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에서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

제4조(유효기한) 이 훈령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시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

